

의안번호	제2871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배둔시의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11. 14.

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287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 14.
제출자: 고성군수

1. 제안사유

-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. 1. 31.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재위탁 필요
- 승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 관리인을 선발하고자 함

2. 위탁근거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- 나.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

3. 위탁내용

가. 시설현황

- 1) 시설명: 배둔시외버스터미널
- 2) 위치 및 규모

구분	소재지			면적(m ²)	지목(구조)	용도	비고
	읍면	리	지번				
부지	회화	배둔	1288-28	1,694	주차장		
건물	회화	배둔	1288-28	81.4	철근콘크리트조	매표소, 대합실 등	

나. 위탁개요

1) 위탁기간: 2025. 2. 1. ~ 2028. 1. 31.(3년간)

2) 소요예산: 금21,600천원(연간)

- 산출내역: 1,800천원 × 12개월 = 21,600천원

3) 위탁방법: 공개모집

4) 위탁내용: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및 시설 관리

4. 관련 법규: 붙임 참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22.12.27. 조2767>

1.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2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3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[제목개정 2022.12.27. 조2767]